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sup>91)</sup>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 : } 366)}$$

##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sup>92)</sup>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sup>93)</sup>)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 법규해설 173쪽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sup>94)</sup>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sup>95)</sup>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법규해설 174쪽에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1. 예) 일할계산료 계산방식

보험기간 : '25.1.1 ~ '26.1.1      피보험자동차 대체일 : '25.12.1  
기납입보험료 : 30만원 <계산> 30만원 × 31/365 = 25,480원

### 92. 사기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취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참조)

### 93. 해지와 해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94.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1항 3호

대체 전후의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되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95.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1항 5호

1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이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 이외의 다른 의무보험 중복계약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sup>96)</sup>**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52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규해설 162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규해설 173쪽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sup>97)</sup>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sup>98)</sup>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

### 9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97.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권, 훈의권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 따위에 적용됩니다.

### 98. 중대한 과실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협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주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 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sup>99)</sup>**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대출이율<sup>59)</sup>**에 따라 **연 단위 복리<sup>53)</sup>**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



### 99.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sup>59)</sup>**에 따라 **연 단위 복리<sup>53)</sup>**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55조 (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sup>100)</sup>**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加害者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법규해설 157쪽」「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법규해설 169쪽」**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법규해설 170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정)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sup>101)</sup>**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sup>102)</sup>**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 100. 신의성실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험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주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1. 예금자보호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102.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 :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있습니다.

## 제60조 (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범규제설 162쪽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61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준용규정<sup>103)</sup>)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103. 준용규정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p> <p>(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p> <p>(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3.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p> <p>(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sup>104)</sup>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margin-left: 40px;">(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li> <li>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li> </ul> <p>(나)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li> <li>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li> <li>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li> </ul> <p style="margin-left: 40px;">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li> <li>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경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li> <li>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li> </ul>

#### 104. 호프만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시 장래에 대한 수입감소분을 현재에 미리 받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105.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25.4.1일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현장사망, 피해자 연령 만 55세('69.8.15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112개월, 2034.8.15 ~ 2025.4.1 = 9년 4개월 14일(월 미만 일자는 버림)), 호프만계수 91.7592 → 300만원X(1-1/3)X91.7592=183,518.400

항 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b>산식</b>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sup>[106]</sup>]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sup>[107]</sup>)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sup>[108]</sup> × 투자비율</p> <p>(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sup>[109]</sup>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b>용어풀이</b></p> <p>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b>산식</b>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p> <p>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b>용어풀이</b></p>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b>106. 주요경비</b> 매입비용(제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b>107. 기준경비율</b> 정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b>108. 노무기여율</b> 사업소득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노무(勞務)가 기여한 비율입니다.
<b>109. 단순경비율</b> 정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항 목	자급 기준								
3. 상실수익액	<p>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 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표기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범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법규제 166쪽)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의 나이</th> <th style="text-align: center;">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2세부터 67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6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7세부터 76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6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p> <p>(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sup>(*)</sup>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sup>(**)</sup>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 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 <b>용어풀이</b></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p><b>마. 호프만 계수<sup>110)</sup></b> : 범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p><b>산식</b></p>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p>i=5/12%, n=취업가능월수</p>

##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 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료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 일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월,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 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 110. 호프만계수의 계산(월미만 일자의 처리)

월미만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호프만계수 산출 시 1개월을 가산합니다.(30일 이하는 미반영)

<예시> ① 사망일 : 2025. 1. 1

② 생년월일 : 1994. 5. 20

③ 보험금지급일 : 2025. 7. 20

④ 취업가능연한 : 2059. 5. 19(생년월일 +65세)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③ - ①) : 2025. 7. 20 - 2025. 1. 1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④ - ③) : 2059. 5. 19 - 2025. 7. 20

⇒ 6개월 + (405개월 + 19일 + 29일)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406개월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237.324 = 243.324

항 목	지급 기준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 <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 <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 <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body> </table>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장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인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b>용어풀이</b>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 <b>산식</b>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math> </div>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li> <li>(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li> </ul> (2) 가사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b>용어풀이</b>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div>																																															
	(3)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li> <li>(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li> </ul>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li> </ul> (5)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li> </ul>																																															

항 목	지급 기준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5px;"><b>용어풀이</b></p> <p>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충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9eaf7;">상해등급</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9eaf7;">인정일수</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 ~ 2급</td><td style="text-align: center;">60일</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 ~ 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30일</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td style="text-align: center;">15일</td></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p>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math>45,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math>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math>4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math>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math>8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math>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math>50,000,000원 \times 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math></p> <p>(*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 미만	16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b>산식</b>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증시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b>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b> <sup>111)</sup> 에 따라 일반의 우내 또는 은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통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b>개호</b> <sup>112)</sup> 를 요하는 자			

**111.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Earl D.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순차이 들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를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12. 개호**

사전적으로 '(다른사람의) 곁에서 돌보아 줍'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항 목	지급 기준
3. 가정간호비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암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 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항 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sup>(*)</sup>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p> <p>(2) 열처리 도장<sup>[13]</sup>료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sup>(*)</sup>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 style="text-align: center;"></p> <p>(*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기액	<p>114)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등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113. 도장 재료의 표면을 보호 혹은 미화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래커 등의 도료를 바르거나 뿐어서 도막(塗膜)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114. 교환기액<sup>[14]</sup>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항 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115)	<p>가.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등급<sup>(1)</sup>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sup>(2)</sup>.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에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sup>(3)</sup>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 용어풀이</p> <p>(*) “등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p> <p>(*)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sup>(1)</sup>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등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등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sup>(1)</sup>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 115. 대차료

“대차료”란 차를 대여(貸與)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항 목	지급 기준
4. 휴차료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사세 하락손해	<p>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p> <p>(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p> <p>(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9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21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례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례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례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례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lt;별표 1&gt;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례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